검 토 보 고 서

의 안 제 70 호

2017. 9. 25.

| 건 명 | 논산시 공설운동장 (공공시설사업소) | 운영・관리 조례 | 일부개정조례안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
| 제안 및 제출자 | 논산시장 | 제안연월일 | 2017. 9. 8. |
| 소관위원회 | 행정자치위원회 | 회부연월일 | 2017. 9. 8. |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제40조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설운동장 입장 시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에는 입장 제한을 예외로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※ 행정자치부 장애인 보조견 출입제한을 규정한 조례 개선통보 사항

□ 주요내용

○ 공설운동장을 입장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 규정 신설(안 제15조제4호)

□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제40조제3항의 취지에 맞게 조례 등에 동물동반 금지규정이 있을 경우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는 예외를 두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기타 내용과 형식이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제반사항을 준수 하였으며, 「장애인복지법」제4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